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63
----------	-------

발의연월일 : 2026. 4. 7.

발 의 자 : 이광희 · 김문수 · 이주희
서미화 · 임미애 · 강준현
강득구 · 김 윤 · 허성무
김우영 · 민병덕 · 허종식
김태년 · 채현일 · 윤종오
의원(15인)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행정 환경을 비롯한 주민의 행정수요가 크게 변하였고 이는 지역별 인구규모, 재정여건, 경제규모 및 산업구조의 차이에 기인함. 이렇듯 지역 간 특성이 다양함에도 획일화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은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취약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공급하지도 못하여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을 증대시켰다는 지적이 있음.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별 주민 요구에 부합하도록 현행 기관 구성에서 다른 형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권력분립의 원칙, 민주적 정당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체장 권한분산형 기관구성(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지방공사 사장 등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며 지방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함.

나. 의회중심형 기관구성(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집행부회의를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집행위원은 행정기구의 장을, 집행위원이 아닌 지방의회의원은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을 두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견제·균형을 이루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 절차(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변경하도록 하고, 주민투표의 형식은 「지방자치법」과 이 법에서 정한 기관구성 형태 중 선호하는 기관구성 형태를 묻는 방식으로 하며, 기관구성 형태 변경이 적용된 날부터 4년 간은 기관구성 형태 변경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함.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요구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주민주권 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란 「지방자치법」 제5장에 따른 지방의회와 같은 법 제6장에 따른 집행기관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 배분 및 조직구성방식 등을 포함한 상호 간의 관계를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4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2장 및 제3장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4. “단체장 권한분산형 기관구성”이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기본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

수·부구청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임명 동의권과 해임 건의권을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로서 제2장에 규정된 기관구성 형태를 말한다.

5. “의회중심형 기관구성”이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집행기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로서, 제3장에 규정된 기관구성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및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단체장 권한분산형 기관구성

제5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임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하는 부단체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 ③ 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된 후 즉시 구성하여야 하며, 그 임명동의안이 지방의회 본의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④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 ⑤ 인사청문회는 공직윤리청문회(「인사청문회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및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청렴성 등에 대하여 청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공직역량청문회(공직후보자의 직무적합성·전문성 등에 대하여 청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분리하여 실시하며, 공직역량청문회에서는 공직윤리청문회의 청문사항에 대하여는 청문을 실시할 수 없다.
- ⑥ 「인사청문회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첨부서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

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지방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의장”은 “지방의회 의장”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 “인사청문대상자”로,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⑧ 그 밖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청문회의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방공사 사장 등의 임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 또는 지방공단의 이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의 임명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 요청안”으로 본다.

제7조(감사위원회) ① 지방의회 소속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③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체감사 활동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인사 및 감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제 9조에 따른 감사위원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그중 1명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새롭게 개시한다.

제9조(감사위원장후보추천위원회) ① 감사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학계·시민단체·언론계가 추천하는 각 1명을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천위원장”이라 한다)은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장의 요청 또는 추천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추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천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가 감사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감사위원회의 위원)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지방위원회의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 소속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2조(준용 규정)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3조(지방의회 사무기구 정원 등에 관한 협의) ①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설치·변경과 지방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설치·변경과 지방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의 정원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의회 사무기구 예산편성 등에 대한 협의) ①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의회중심형 기관구성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③ 제2항의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개시일 이후 최초 임시회의 회기 내에 실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퇴직, 해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실시한다.

④ 지방의회는 제2항의 선거에서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⑤ 제16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일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⑦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5일 내에 지방의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기탁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로 본다.

③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불신임을 의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인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불신임 표결을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③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소환)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소환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원의 직은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9조(집행부회의) ① 집행부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 집행부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부단체장, 제20조에 따른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부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단체장은 부의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집행부회의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집행위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선일 결정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집행위원을 임명한다.

- ② 집행위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정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집행위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집행위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할 수 있다.
- ④ 집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정무직 지방공무원의 보수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위원인 지방의회의원이 집행위원의 직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사임 또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집행위원을 새로 임명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집행위원이 임명되거나 사임,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의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집행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정책의 기획과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 ⑧ 집행위원이 아닌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겸임할 수 있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지방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때에는 선출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 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③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어 제1항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직에서 퇴직되지 아니한다.

제2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등) 지방의회 소속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두며,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지방자치단체에 두지 않을 수 있는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 절차

제24조(「주민투표법」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이 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변경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변경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을 따른다.

제25조(주민투표의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26조(주민투표의 투표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대한 주민투표의 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

제27조(주민투표의 발의 및 주민투표 형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 요지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기 전에 주민투표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주민투표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하여 「지방자치법」과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중 선호하는 기관구성 형태를 묻는 내용으로 한다.

제28조(주민투표결과에 따른 조례의 제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를 반영하여 주민투표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의 적용일(제26조에 따른 투표일에 임기 중인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정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보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주민투표 실시의 제한) 「주민투표법」 제2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이 적용된 날(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적용

일을 말한다)부터 4년 이내에는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제30조(국가 등의 지원) ① 「주민투표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주민투표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처음 실시하는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주민투표에 대하여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한다.

② 국가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시·군 또는 자치구가 기관구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